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2월 3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2.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사업주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 지원사업 등,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목적)는 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하고자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내용도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법의 정의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3조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개정
- 안 제4조(사업주의 책무)는 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규정
- 안 제5조(시행계획),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안 제8조(업무의 위탁),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와 취지는 같음
- 안 제7조(지원사업 등)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지원사업 내용을 법 제3장에서 규정한 예방 정책에 맞추어 개정
- 안 제9조(홍보)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구민 등의 이해와 관심 제고 및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

아실현,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2008.06.05. 시행 2008.12.06.) 되었으나,

-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1.12.07.시행 2022.06.08.)되었음.
- 한편,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동안 출생·돌봄 등 이유로 ▲경력단절 경험 42.6% ▲평균 발생연령 29세 ▲경력단절 기간 8.9년으로 나타났다으며,
-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재취업 촉진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한편,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였지만,
- 2023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촉진은 침체된 국가·지역 경제발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우리 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차인영, 정선희,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의원(5인)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등,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마.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
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
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